

정보화·효율화를 지향한 지방세조직의 개편 방향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서론

정보화·효율화를 지향한 지방세 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둘째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화와 함께 효율화도 증진할 수 있는 조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화란(informationization)란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확장되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래하는 미래형 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에 따라 정보의 축적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와 시민간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시민들로 부터의 참여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¹⁾. 결과적으로 정보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정조직 체계로의 개편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에 효율화에 초점을 두게되면 조

세순응 비용의 절감, 체납세의 감소 등 조직내부의 운영과정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이는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 효율화의 의미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정조직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획기적 정보기술의 발달은 재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경우 조세행정의 방향은 납세자의 조세순응(compliance)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도 납세자의 조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무조직 자체의 변화라기 보다는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채 시행방법상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책효과의 지속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말해 시민의 참여

1) K. Young, "The Just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in Goldsmith ed. Essays on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 1986. 이승중,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장기적 발전방향",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9, pp. 55-56에서 재인용.

2) Glenn P. Jenki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1996. PP. 1-3.

증대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정조직의 개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현행 지방세조직 체계

1. 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세무 조직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무 조직

광역자치단체의 세무행정조직은 <표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이 과단위에 주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만이 계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세무조직의 구성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의 절대액수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세정과가 상위의 조직체계에 구성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좀더 세분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예로 지방세의 절대액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세무관련부서가 세무 행정과와 세무운영과로 구성되어 있고

<표 1> 광역자치단체별 세정조직 편제

자치단체		국	과	계
광역시	서울	행정관리국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부산	재정관	세정담당관	
	대구	내무국	세정과	
	인천	자치행정국	세정과	
	광주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대전	자치행정국	세정과	
	울산	자치행정국	지방세과	
도	경기	자치행정국	세정과	
	강원	자치지원국	세무회계과	세정계
	충북	자치행정국	재정과	세정계
	충남	자치문화관광국	세정과	
	전북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남	기획관리실	재정담당관	세정계, 세무조사계
	경북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남	자치지원국	세정과	
	제주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	세정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 편람, 1998.

그 산하에 8개의 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세정담당관 산하에 5개의 세무관련계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수입의 절대액 수가 적은 일부 도의 경우는 계단위에서 지방세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정과에 설치된 계조직은 자치단체별로 일관된 체계를 갖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세정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세무조사계, 심사계 등 5개의 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세정계는 지방세 제도운동을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계는 토지등급 설정, 수정등 조정업무 지도, 부동산 과세표준액 결정 및 승인, 부동산 과표 시가조사, 표준지 관리, 재산관련세 과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계는 지방세의 세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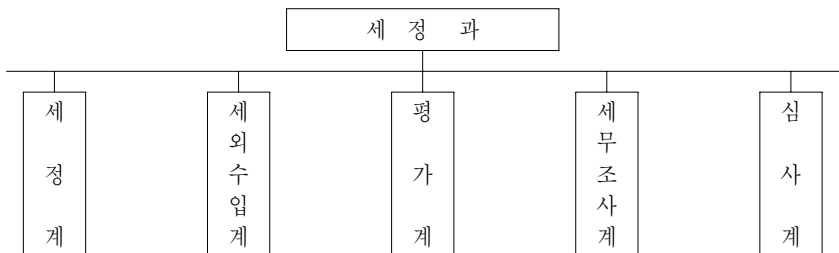
와 각종 과세자료의 통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심사계는 지방세의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지방세 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시의 지방세무조직

지방시의 지방세무조직은 전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크게 2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부과와 징수기능이 철저히 분화되어 있는 지역(A 유형), 둘째는 부과와 징수 두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B 유형)이 그것이다.

먼저 A 유형의 경우(<그림 2> 참조), 과단위에서 부과와 징수가 구분되는 유형으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광역자치단체(도)의 지방세무 관련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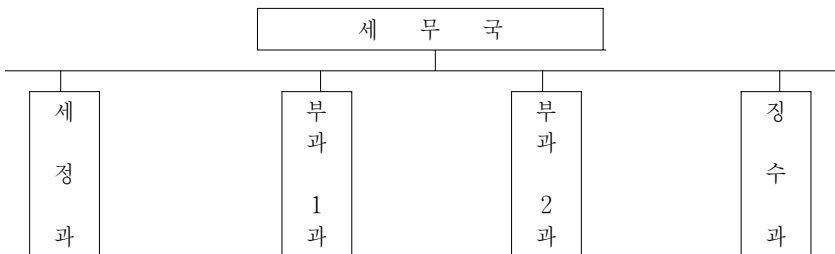
부천시시의 경우는 과단위에서 부과와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있지만 시흥시의 경우는 계단위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은 둘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구분하므로써 세무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상호통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 유형은(<그림 3> 참조) 부과와 징수기능의 상호견제보다는 유사세목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분하는 것으로 군포시, 구리시 등의 세정조직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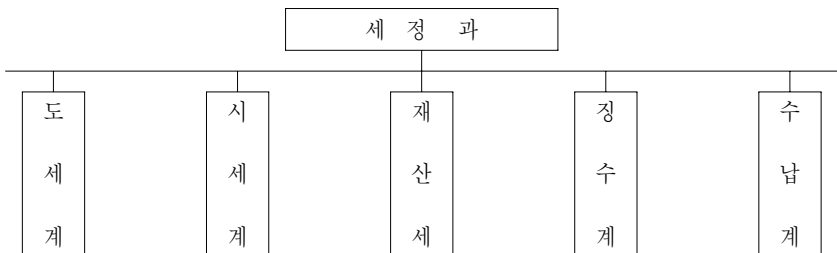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부조리의 방지보다는 우리나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가 세목별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연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시의 세무관련 부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과 또는 세정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과 또는 세정과는 대부분 부과담당, 징수담당, 재산

<그림 2> 부천시의 세무기구(A 유형)



<그림 3> 군포시의 세무기구(B 유형)



세담당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 조사계 또는 평가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부과담당은 과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일반사무,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취득세 부과조정, 등록세 부과조정, 자동차세 부과조정, 농지세 부과조정, 면허세 부과조정, 도축세 부과조정, 담배소비세, 과내예산·경비 및 물품관리, 납입감액 결정통보, 지방세 가산세조정 및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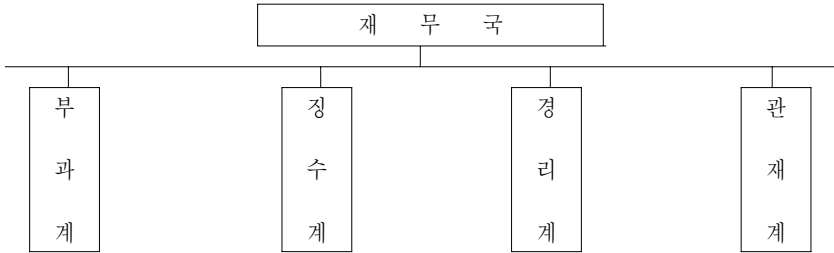
그리고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계획수정 및 시행, 납세홍보 및 징수 독려, 독촉장 발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압류물건 공매, 징수촉탁, 수입일계표 정리, 지방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금배정 및 수급계획, 세목별 과징상황보고, 지방세 수입과징 상황보고, 도세보고(월보), 도세 세입징수액 계산서(기보), 교육세 세입징수 보고(기보), 과오납 환불, 도세불입, 세입정정, 가산금조정, 등록세 징수결의 및 이동증감 결의, 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은행 지도감독, 세입결산 및 총괄, 이월액 조서 작성,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결의, 지방교부세 수입결의, 수입금 출납원등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담당은 재산세 부과조정,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도시계획세 부과조정, 공동시설세 부과조정, 종합토지세 p·c운영,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종합토지세 과세 및 미과세 증명발급 등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조사와 평가담당은 주로 기존의 부과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분할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인 및 사업소 세무조사계획 수립, 법인 및 사업소 세무조사, 사업소세 및 주민세에 관한 사항, 농지세원 조사, 토지, 건물 일제조사, 기타세원 발굴,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무신고 이동지 조사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군의 지방세무조직

군 자치단체의 지방세무조직은 세무과 또는 재무과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데 세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세정기능외에 경리와 재산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군 자치단체의 세무관련 부서는 대부분이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설계되어 있으며,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 등 4개의

<그림 4> 군 자치단체의 세무기구



계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군 자치단체의 세정부서중 정리계와 관재계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정업무는 주로 부과계와 징수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중 부과계는 지방세 개인별 이동증감, 재산세대장 직권 등재, 사업소 신고지, 농지세 자진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세원조사,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지방세 고지, 농지재해 감면신청, 세무사범 처리, 세원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납세홍보, 농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지방세 이동증감 결의, 지방세담당공무원 순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징수계는 표준지 시가 조사보고, 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대부료 이자징수, 공유재산의 변상금 조정징수, 국유재산의 변상금 연체이자 조정징수, 국유재산

의 임대료 산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건물의 과세지가 표준액 조정, 기타물건 과세시가 조사,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청 지정 실적보고, 변상금 조정, 국공유 건물현황 보고, 지방세 징수독려, 과오납의 정리 및 환불, 도세 및 세외수입 교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부서간 연계

가. 신고납부세목의 부서간 연계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표 2>와 같다.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부과과정은 대

<표 2> 신고납부세목 및 내용

세 목	신고납부 내용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	일반사항	취득시기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취득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실종선고에 의한 취득	실종선고일부터 6월 이내
	중과세로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면분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세	일반사항	등기·등록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중과세로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면분 추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경주·마권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신고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
	결정·경정분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수정신고분	고지서상 납부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분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특별징수분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사 업 소 세	재산할	매년 7월 10일까지
	종업원할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지세	중간예납	제1기분: 8월 16일-31일 제2기분: 12월 16일-31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정징수	다음해 3월 16일-31일
도 축 세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담 배 소비세	제조자의 당월 반출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업자의 보세구역 당월 반출분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징수 시·군	다음달 10일까지
지 역 개발세	일반사항	다음달 10일까지
	컨테이너세	다음달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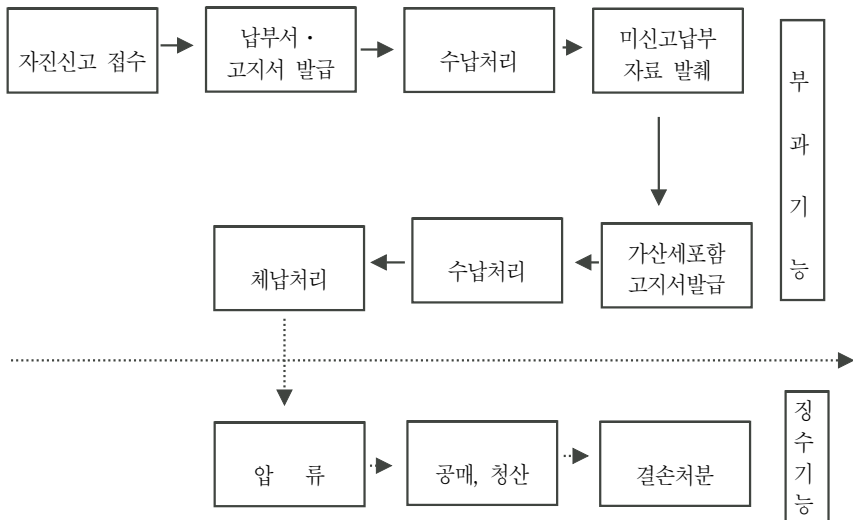
체로 자진신고서 접수, 납부고지서 발급, 수납처리, 미신고납부자료 발취, 가산세 고지서 발급, 수납처리, 체납처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징수과정은 일차 체납통지서 발급 이후부터 이루어지며 주로 체납처리와 관련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납부세목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은 자진신고서 납부부터 체납처분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나. 보통징수세목의 부서간 연계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지방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목의 납세의무자 및 납기 등은 <표 3>과 같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의 경우도 부과업무는 일차체납고지서까지는 부과기능에 속하며 그 이후의 결손처분까지의 업무가 징수업무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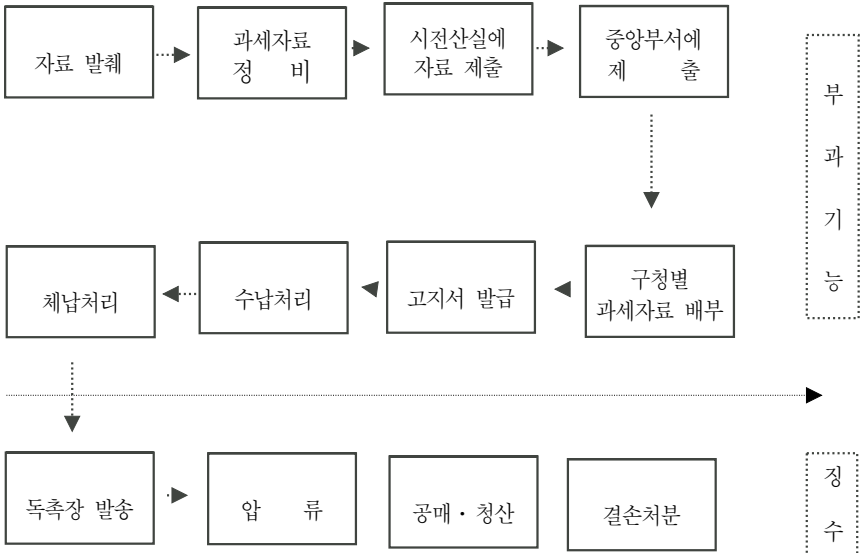
<그림 5>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연계 과정



<표 3> 보통징수 세목의 종류 및 내용

세 목	납세의무자	납 기	관련조항
재 산 세	재산세과세대상에 재산소유자로 등재된자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제190조 제1, 2항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 10월 16일 10월 31일	제234조의17 제234조의18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 건물 소유자	건물분(재산세와 동일) 토지분(종토세와 동일)	제238조
공동시설세	소방시설등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	재산세와 동일	제241조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제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제196조의6 제1, 2항
면 허 세	면허소지자	납세고지서상 납부기일	제165조

<그림 6> 보통징수세목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연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징수기능은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세원조사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과와 징수기능은 징수부서→ 부과부서→징수부서의 업무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6> 참조).

그러므로 현행 세무행정 조직체계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세 부과 · 징수의 자치 단체 계층간 연계 현황

지방세 관련업무는 한 자치단체내의

부서간에도 분담처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에도 위임 · 처리하고 있다. 즉 시 · 도세는 시 · 군으로 위임하고, 다시 시 · 군은 읍 · 면 · 동에 당해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 있으며, 시 · 군세도 읍 · 면 · 동에 위임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 계층간 지방세관련업무의 위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3조와 제95조로서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각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라 도와 시 · 군 그리고 읍 · 면 · 동은 지방세의 부과와

<표 4> 지방세관련업무의 위임규정

관련법규	조 문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93조	시 · 도와 시 · 군 · 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 시, 도지사 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도세 조례	제 6 조	도지사의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출장소장 을 포함)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시세 조례	제 6 조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가 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 속공무원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징수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도세의 경우,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 및 군수가 읍·면의 협조하에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기술한 시·군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나타나는 부과과정을 거쳐 다시 읍·면으로 징수결의서가 통지되게 된다. 징수결의통지서를 받은 읍·면장은 수납부를 작성하고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련부서와의 1차적 관계를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이후에도 세목별 월말집계를 하여 부과·징수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 수납부 등을 정리하고 이를 시청 및 군청의 징수부와 월 1회 이상 대사를 하며, 이외에도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결손처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징수관련부서와의 2차적 관계가 끝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 및 군수는 세입징수보고서를 세목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시·군별로 위임 및 재위임되고 있는 지방세관련사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관련업무

지방세관련 단위업무명	
납세완납증명	취득세부과고지
지방세감면신청	면허세부과고지
등록세비과세확인	지방세체납세금 독촉 및 징수
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감액 결손자료 작성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지방세체납처분
과오납금환부금 지급통지	주민세부과고지
지방세변동 자료관리 및 고지서 전달	법인세균등할주민세 부과대상자 조사보고
지방세수납부 작성관리	사업소세부과대상자 사업장 조사
농지세부과고지	건축물실측 현지조사
도축세부과고지	

자료 :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2000.

4. 지방세무조직의 특징

우리 나라의 지방세무행정조직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을 일반화하여 조직체계의 현황을 기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지방세무조직간에는 자치단체 계층별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분모를 토대로 현행 지방세무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지방세체계는 도세와 시군세 등 징수주체별로 분류되어 징수액의 사용은 명확히 구별이 된다. 그러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의 세무관련 부서는 직접적인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 보다는 지방세제도의 운영, 세원조사, 소송관리 등 전반적인 지방세 관련업무를 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관련부서에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실질적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세무부서의 분장업무는 주로 기능별로 분배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과징별 그리고 세목별 기능분담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동도 조례로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있다. 과거 세정계에서 일괄 담당하던 부과·징수업무를 부과계, 징수계로 구분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상호 통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일부자치단체의 경우 관련세목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현행 지방세의 과세대상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은 과세대상 및 세율이 각 세목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부과와 징수업무를 구분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을 다시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한 세목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한 조직이 세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라면 이러한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시의 세무조직에서 조사평가제

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평가계는 1995년 이루어진 행정구역개편 이후 신설 내지는 강화된 기능으로서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무신고 이동지 조사결정 등 기존의 부과계 업무를 일부 분할하여 관장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세무조사, 토지, 건물등의 일제조사 등 기존의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과세대상의 조사 및 평가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보화 효율화를 위한 지방세 조직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1980년대 이후 획기적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세행정의 방향도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과거 조세행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이었으나 정보체계의 발달로 컴퓨터의 활용이 증가된 현대에는 납세자에 대한 기록과 정보관리로 그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거나 조세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조세순응은 더욱 확보될 수 있고 납세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조세순응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납세자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납세자를 고객으로 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³⁾.

이 경우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제1차적 과제는 각 개별 세무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적절한 정도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⁴⁾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도 정보의 확보와 연관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Glenn P. Jenki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1996. p.4.

4) Ibid, p. 7.

2. 세무조직체계의 개편 방향

현행 세무조직의 대다수는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을 구분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설계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지나치게 세무비리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문의가 있을 때 한사람이 모든 문의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의 경우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한명의 담당자가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말해 부과징수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대부분의 징세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과와 징수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납세자가 따로따로 질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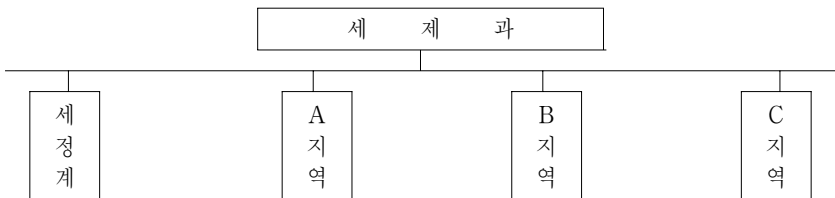
이는 현행 지방세무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이에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세목별 조직 둘째, 지역별 조직 등이 상정될 수 있다. 세목별 조직은 부과와 징수업무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설계는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제로서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세목간 연계가 긴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한 개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인 지역별 조직체계는 당해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정기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세정 일반업무를 하는 부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정계에서 수행하던 기능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정조직을 지역별 조직체제로 전환할 경우 <그림 7>에 나타난 바

<그림 7> 지역별 조직체계 예시



와 같이, 세정계, 지역별 담당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계단위의 크기 및 개수는 당해 자치단체내의 담당지역의 인구, 넓이 등을 기초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지역별 조직이 갖는 장점으로 는 하나의 부서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고 지역의 사정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식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⁵⁾ 주민과의 긴밀한 연계는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와 연관해서는 지역별 조직체계를 고려해볼 만 하다.

지방세정조직을 지역별 편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한 사람이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연계로 인한 세무부조리의 발생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세무행정의 전산

화로 해결이 가능하며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세무부조리를 제도로써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부조리를 조직설계의 기본인식으로 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2. 자치단체 계층별 세무업무의 연계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지방세무행정의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시·군 그리고 읍·면·동의 연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세정업무에 대한 기능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정업무는 모두 집행기능으로 분석되고 있다⁶⁾.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역부터 시·군, 읍·면·동까지 모두 집행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

5) 이영희, 체납세의 징세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p. 74.

6) 한국능률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청남도 경영진단보고서, 1999.

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집행 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납세서비스개선, 인프라 구축 등 정책개발에 치중하는 한편 도내 각 시·군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은 기획기능보다는 집행기능 위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방세징 업무중 체납세의 징수와 같은 기능은 한 자치단체에만 국한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각 개별자치단체별로 전산화와 같은 세정인프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재원의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징업무의 특성상 세정기획기능은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집행기능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읍·면·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지방세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이 고지서전달, 체납세 징수 및 처분, 지방세부과대상조사 등 본청으로 이관되어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기존의 업무중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는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3.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개편도 필요하지만 지방세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세무행정 전 과정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기술한 자치단체계층별 업무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로,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별 통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획기능을 주로하는 광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

7)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2000.

전산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⁸⁾ 당해 지역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연계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납처분의 경우 체납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지역간 연계가 곤란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광역적인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전산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의 체납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전산망과 세무전산망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전산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특정기간 다시말해 주간 또는 월간 주소 변경된 자료 만을 별도로 제공받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세조직이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하여 여기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중 하나로 주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자체의 개편 외에도 조직내부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세무직렬의 6급 상한제는 승진할 경우 일반직화되므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세무행정의 전문화에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세무인력의 승진상한제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인력의 충원은 당해 자치단체 전체의 인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행정업무가 증대하더라도 세무인력 만의 증원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의 증대보다는 업무의 절감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납세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업무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8) 광명시의 통합전산망이 예로될 수 있다